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정부혁신의 국제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지방시대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승강기 사고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유·도선 사고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위 1명), 다중운집인파사고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감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업무 수행을 위해 디지털정부혁신실의 공공데이터국을 공공지능데이터국으로 개편하며,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정보통신체계 총괄이라는 소관 기능을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국(局) 단위 기구임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재난안전정보센터의 명칭을 재난안전정보통신국으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정부청사관리본부에 청사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기록원의

나라기록관·역사기록관·행정기록관의 명칭을 방문객 입장에서 기록관의 위치가 쉽게 연상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남분원·부산분원·대전분원으로 각각 변경하며,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명칭을 기관의 대표 기능이 명확·간결하게 표현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재난안전교육원으로 변경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정원 14명(5급 6명, 6급 5명, 7급 2명, 소방위 1명), 국가기록원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2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정원 1명(5급 1명) 및 대통령기록관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을 “국가재난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공데이터국”을 “공공지능데이터국”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전자정부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안정성에 관한 사항

제12조제3항제24호부터 제10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8호부터 제1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본인확인 정책 및 공통 운영기반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

2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전환

확산 관련 시책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6. 지역정보화 정책·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7. 지역정보화 관련 법인·단체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28. 미래의 지역정보공동체 구성에 관한 사항

29.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응용서비스의 개발·확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0.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워크(smart work)에 관한 사항
31.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협업시스템의 구축·운영
32. 전자정부 관련 국제교류·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3.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4. 전자정부 관련 해외진출의 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5. 전자정부 관련 국제평가지수 관리에 관한 사항
36. 정부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과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37. 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
38. 정부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협의체 운영
39.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과 성과 관리·평가
40. 정부혁신 관련 교육·홍보, 변화관리와 우수사례 발굴·확산
41.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업무 총괄·지원
42.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평가, 우수사례 확산·전파 및 교육·홍보
43.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총괄·조정
44.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45. 행정절차제도의 운영 및 개선
46. 행정기관 간 협업제도 및 협업시스템 운영·개선
47. 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48. 행정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49. 지식행정 활성화 추진
- 50.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 및 시스템의 운영·개선
- 51.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개선
- 52. 행정사 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지원
- 53. 공무원 차량 관리제도의 운영
- 54.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55.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과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 56. 민원사무 처리 상황, 운영실태의 확인·점검 및 평가
- 57. 통합전자민원창구 관리·운영과 전자민원 공통기반서비스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58. 수혜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59. 청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
- 6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
- 6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관련 평가와 개선권고 등에 관한 사항
- 62.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63. 업무관리시스템 및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개선
- 64. 문서·관인과 정책실명제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 65.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 업무의 운영 지원
- 66. 국민의 정책 과정 참여 기획·홍보 및 제도화 연구
- 67. 국민참여를 통한 공공정책과 서비스 과제의 발굴·관리
- 68. 온라인 국민 참여 촉진·확산과 국민디자인단의 운영 지원
- 69. 공무원 제안 제도와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개선
- 70. 생활공감정책의 추진과 소관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
· 운영 및 지원
- 71. 공공데이터에 관한 제도·정책의 연구·개선과 기본계획의 수립
· 총괄·조정
- 72.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73.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관련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74.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제도·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 7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 76.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 77.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기반 구축·운영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
- 78.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과제의 발굴 및 수행
- 79.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공무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 80.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의 발굴에 관한 사항
- 81.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기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82. 공공데이터 구축·품질관리·표준화와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에

관한 사항

83. 국가기준데이터 구축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4.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및 결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5.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제도·정책의 기획·총괄 및 지원
86. 전자정부서비스의 구축·운영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87. 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개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88. 전자정부 공통서비스와 공통 기반의 구축·지원
89.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과 이용제도에 관한 사항
90.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추진에 관한 사항
91. 전자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확산에 관한 사항
92. 국민 맞춤형 서비스의 추진과 총괄·조정
93. 전자정부 서비스 연계 및 통합에 관한 사항
94. 전자정부 사업의 평가와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95. 전자정부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96.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 도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7. 전자증명서에 관한 제도 개선과 전자증명서의 발급·유통에 관한
사항
98.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99. 모바일 기반 전자정부서비스와 공통 인프라의 구축·운영
100.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공분야 업무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1. 행정정보 공유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102.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103.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조정
 104. 행정정보 공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106. 행정정보 목록 관리와 공동이용 행정정보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107. 정책정보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유통 기반 구축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8. 행정정보 표준화, 품질관리 등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
 109.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운영 및 관련 시책 추진
 110. 행정정보 등을 활용한 공공분야 구비서류 감축에 관한 사항
- 제12조제4항 중 “제27호”를 “제35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28호부터 제61호”를 “제3항제36호부터 제70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공공데이터국장은 제3항제62호부터 제72호”를 “공공지능데이터국장은 제3항제71호부터 제84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3항제73호부터 제107호”를 “제3항제85호부터 제110호”로 한다.
- 제22조제2항 중 “재난안전정보센터”를 “재난안전정보통신국”으로, “국장 및 센터장”을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7호 중 “국가민방

위 재난안전교육원”을 “국가재난안전교육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재난안전정보센터장”을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제36호 및 제3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6호부터 제35호까지를 각각 제19호부터 제2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제29호부터 제3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9호부터 제4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3호부터 제45호까지를 각각 제36호부터 제3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3호부터 제4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관련 지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39호에서 제45호까지 같다)

40. 재난과 관련된 상황분석 및 상황판단회의의 운영

41. 재난사태의 선포·해제에 관한 사항

42. 재난 관리대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3. 재난 위험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4.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45. 재난 유형별 표준대응방법의 개발·보급

④ 재난관리정책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24호까지, 제39호부터 제45

호까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중 낙뢰,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 물체의 추락·충돌에 따른 자연재난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관련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 자연재난대응국장은 제3항제25호부터 제38호까지, 제39호부터 제45호까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중 낙뢰,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 물체의 추락·충돌에 따른 자연재난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3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록물 수집·분류·평가 및 폐기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 시행

1의2. 기록물평가심의회에 운영에 관한 사항

제36조제2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의 제목 “(나라기록관, 역사기록관 및 행정기록관)”을 “(성남분원, 부산분원 및 대전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집·관리 및 전

시·열람”을 “보존·전시 및 열람”으로, “나라기록관, 역사기록관 및 행정기록관”을 “성남분원, 부산분원 및 대전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나라기록관, 역사기록관 및 행정기록관에 관장”을 “성남분원, 부산분원 및 대전분원에 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나라기록관장”을 “성남분원장”으로, “역사기록관장 및 행정기록관장”을 “부산분원장 및 대전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관장”을 “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나라기록관, 역사기록관 및 행정기록관”을 “성남분원, 부산분원 및 대전분원”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을 “국가재난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을 “국가재난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59조제3항 전단 중 “17명(치안감 1명, 총경 2명, 경정 8명, 경감 2명, 경위 4명)”을 “18명(치안감 1명, 총경 2명, 경정 8명, 경감 3명, 경위 4명)”으로, “8명(소방령 5명, 소방경 1명, 소방위 2명)”을 “7명(소방령 5명, 소방경 1명, 소방위 1명)”으로, “6명(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1명)”을 “7명(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2명)”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전단 중 “재난안전정보센터”를 “재난정보통신국”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1,647”을 “1,643”로 하고, 일반직 계 “1,605”를 “1,600”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총경 포함) “1,536”을 “1,531”으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및 소방령이하 “8”을 각각 “7”로 하며, 경찰공무원 계 “23”을 “2

5”로 하고, 총경 또는 4급 이하 “22”를 “24”로 한다.

별표 3 중 총 계 “1,301”을 “1,294”로 하고, 일반직 계 “1,290”을 “1,28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246”을 “1,239”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안전부의 정원 14명(5급 6명, 6급 5명, 7급 2명, 소방위 1명)과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정원 9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소속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국가기록원 · 정부청사관리본부 · <u>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u> 및 대통령기록관을 둔다.	제2조(소속기관) ① ----- ----- - - - - - ----- ----- <u>국가재난안전교육원</u>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① (생략)	제12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① (현행과 같음)
② 디지털정부혁신실에 디지털정부정책국, 정부혁신국, <u>공공데이터국</u> 및 공공서비스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 ----- <u>공공</u> <u>지능데이터국</u> ----- -----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u>전자정부 관련 제품(「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이 고시된 정보보호시</u>	14. <u>전자정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안정성에 관한 사항</u>

시스템은 제외한다)의 시험·평가에 관한 사항

15. ~ 23. (생략)

24. 전자정부 관련 국제교류·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5.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6. 전자정부 관련 해외진출의 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7. 전자정부 관련 국제평가지수 관리에 관한 사항

28. 정부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과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29. 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

30. 정부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협의체 운영

31.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과 성과 관리·평가

32. 정부혁신 관련 교육·홍보, 변화관리와 우수사례 발굴·확산

33.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업무 총괄·지원

15. ~ 23. (현행과 같음)

24.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본인확인 정책 및 공통 운영 기반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전환 확산 관련 시책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6. 지역정보화 정책·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7. 지역정보화 관련 법인·단체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28. 미래의 지역정보공동체 조성에 관한 사항

29.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응용서비스의 개발·확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0.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워크(smart work)에 관한 사항

31.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협업시스템의 구축·운영

32. 전자정부 관련 국제교류·

34.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평가, 우수사
 례 확산·전파 및 교육·홍보

35.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총괄·조정과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36.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
 ·개선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37. 행정절차제도의 운영 및 개
 선

38.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행정기관 간 협업제도 운영·
 개선

39.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지
 원에 관한 사항

40. 협업과제 중 시스템 연계·
 통합과 정보공유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 및 지원

41. 지식행정제도의 운영·대외
 협력

42.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 및
 시스템의 운영·개선

43.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개선

44. 행정사 제도의 연구·개선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3.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업
 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4. 전자정부 관련 해외진출의
 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5. 전자정부 관련 국제평가지
 수 관리에 관한 사항

36. 정부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
 정·개정과 종합계획의 수립
 ·추진

37. 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

38. 정부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
 트워크의 구축과 협의체 운영

39.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
 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과
 성과 관리·평가

40. 정부혁신 관련 교육·홍보,
 변화관리와 우수사례 발굴·
 확산

41.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업무 총괄·지원

42.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평가, 우수사
 례 확산·전파 및 교육·홍보

43.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

및 운영 · 지원

45. 공무용 차량 관리제도의 운영

46.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47.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
· 개선과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우수사례의 발굴 · 확산

48. 민원사무 처리 상황, 운영실태의
확인 · 점검 및 평가

49. 통합전자민원창구 관리 · 운영과
전자민원 공통기반서비스의
개발 · 보급에 관한 사항

50. 수혜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원문
정보공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

5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 관련 평가와 개선권고
등에 관한 사항

53.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54. 업무관리시스템 및 정부전자
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 · 개선

계획의 수립 · 총괄 · 조정

44.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
· 개선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45. 행정절차제도의 운영 및
개선

46. 행정기관 간 협업제도 및
협업시스템 운영 · 개선

47. 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 · 조정

48. 행정기관의 조직문화 개선
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 · 조정

49. 지식행정 활성화 추진

50.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 및
시스템의 운영 · 개선

51.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 · 개선

52. 행정사 제도의 연구 · 개선
및 운영 · 지원

53. 공무용 차량 관리제도의
운영

54.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55.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

55. 문서·관인과 정책실명제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56.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
관 업무의 운영 지원

57. 국민의 정책 과정 참여 기획
· 홍보 및 제도화 연구

58. 국민참여를 통한 공공정책
과 서비스 과제의 발굴·관리

59. 온라인 국민 참여 촉진·확
산과 국민디자인단의 운영 지
원

60. 공무원 제안 제도와 국민 제
안 제도의 운영·개선

61. 생활공감정책의 추진과 소
관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
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62. 공공데이터의 관리·공유·
개방·이용 등에 관한 제도·
정책의 연구·개선과 기본계
획의 수립·집행·총괄·조정

63.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데
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 및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분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4.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

· 개선과 행정기관의 민원처
리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56. 민원사무 처리 상황, 운영실
태의 확인·점검 및 평가

57. 통합전자민원창구 관리·운
영과 전자민원 공통기반서비
스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58. 수혜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9. 청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

6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원
문정보공개 관련 제도 및 정
책의 수립

6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 관련 평가와 개선권고
등에 관한 사항

62.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63. 업무관리시스템 및 정부전
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개
선

64. 문서·관인과 정책실명제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65.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
관 업무의 운영 지원

<u>성화 관련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u> 65. <u>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제도·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u> 66. <u>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추진</u> 67. <u>공공데이터 구축·품질관리·표준화와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에 관한 사항</u> 68. <u>국가기준데이터 구축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u> 69. <u>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및 결합 등 관리에 관한 사항</u> 70. <u>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기반 구축·운영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u> 71. <u>공공분야 데이터 분석과제의 발굴 및 수행</u> 72. <u>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공무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u> 73. <u>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제도·정책의 기획·총괄 및 지원</u> 74. <u>전자정부서비스의 구축·운</u>	<u>66. 국민의 정책 과정 참여 기획·홍보 및 제도화 연구</u> <u>67 국민참여를 통한 공공정책과 서비스 과제의 발굴·관리</u> <u>68. 온라인 국민 참여 촉진·확산과 국민디자인단의 운영 지원</u> <u>69. 공무원 제안 제도와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개선</u> <u>70. 생활공감정책의 추진과 소관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u> <u>71. 공공데이터에 관한 제도·정책의 연구·개선과 기본계획의 수립·총괄·조정</u> <u>72.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u> <u>73.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관련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u> <u>74.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제도·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u> <u>7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추진</u>
---	--

영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75. 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개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76. 전자정부 공통서비스와 공통 기반의 구축·지원

77.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과 이용제도에 관한 사항

78.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추진에 관한 사항

79. 전자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확산에 관한 사항

8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의 추진과 총괄·조정

81.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의 알림, 상담, 고지 등에 관한 통합서비스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2. 전자정부 사업의 평가와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83. 전자정부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8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전환 확산 관련 시책의

76.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77.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기반 구축·운영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

78.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과제의 발굴 및 수행

79.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공무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80.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의 발굴에 관한 사항

81.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기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2. 공공데이터 구축·품질관리·표준화와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에 관한 사항

83. 국가기준데이터 구축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4.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및 결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5.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제도·정책의 기획·총괄 및 지원

86. 전자정부서비스의 구축·운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5. 지역정보화 정책 ·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6. 지역정보화 관련 법인 · 단체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87. 미래의 지역정보공동체 조성에 관한 사항
88.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응용서비스의 개발 · 확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89.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워크(smart work)에 관한 사항
90.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협업시스템의 구축 · 운영
91.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92.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의 발굴에 관한 사항
93.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기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4.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 도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5. 전자증명서에 관한 제도 개

영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87. 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개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88. 전자정부 공통서비스와 공통 기반의 구축 · 지원
89.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과 이용제도에 관한 사항
90.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추진에 관한 사항
91. 전자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 · 확산에 관한 사항
92. 국민 맞춤형 서비스의 추진과 총괄 · 조정
93. 전자정부 서비스 연계 및 통합에 관한 사항
94. 전자정부 사업의 평가와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95. 전자정부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96.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 도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7. 전자증명서에 관한 제도 개선과 전자증명서의 발급 · 유

<u>선과 전자증명서의 발급 · 유통에 관한 사항</u> 96. <u>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u> 97. <u>모바일 기반 전자정부서비스와 공통 인프라의 구축 · 운영</u> 98. <u>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공분야 업무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u> 99. <u>행정정보 공유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u> 100. <u>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u> 101. <u>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 · 조정</u> 102. <u>행정정보 공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u> 103. <u>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u> 104. <u>행정정보 목록 관리와 공동이용 행정정보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u> 105. <u>정책정보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유통 기반 구축 계획에 관한 사항</u>	<u>통에 관한 사항</u> 98. <u>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u> 99. <u>모바일 기반 전자정부서비스와 공통 인프라의 구축 · 운영</u> 100. <u>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공분야 업무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u> 101. <u>행정정보 공유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u> 102. <u>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u> 103. <u>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 · 조정</u> 104. <u>행정정보 공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u> 105. <u>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u> 106. <u>행정정보 목록 관리와 공동이용 행정정보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u> 107. <u>정책정보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유통 기반 구축 계획의 수립 및 시행</u>
--	--

획의 수립 및 시행

106. 행정정보 표준화, 품질관리
등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

107.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의 운영 및 관련 시책 추진

<신 설>

<신 설>

<신 설>

④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은 제3
항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
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 정부혁신국장은 제3항제28
호부터 제61호까지의 사항에 관
한 사무를 분장한다.

⑥ 공공데이터국장은 제3항제6
2호부터 제72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⑦ 공공서비스국장은 제3항제7

108. 행정정보 표준화, 품질관리
등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

109.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의 운영 및 관련 시책 추진

110. 행정정보 등을 활용한 공
공분야 구비서류 감축에 관한
사항

④ -----
----- 제35호-----
-----.

⑤ ----- 제3항제36호
부터 제70호-----
-----.

⑥ 공공지능데이터국장은 제3
항제71호부터 제84호-----
-----.

⑦ ----- 제3항제85

3호부터 제10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22조(안전예방정책실) ① (생 략) ② 안전예방정책실에 안전정책 국, 예방정책국 및 <u>재난안전정 보센터</u>를 두되, 각 <u>국장</u> 및 <u>센터 장</u>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 46. (생 략) 47. <u>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u> 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8. ~ 54. (생 략) ④·⑤ (생 략) ⑥ <u>재난안전정보센터</u>장은 제3 항제48호부터 제54호까지의 사 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23조(자연재난실) ①·② (생 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 18. (생 략) 19. ~ 25. (생 략)	<u>호</u>부터 제110호----- -----. 제22조(안전예방정책실) ① (현행 과 같음) ② ----- ----- <u>재난안전정보 통신국</u>을----- <u>국장</u> -----. ③ -----. 1. ~ 46. (현행과 같음) 47. <u>국가재난안전교육원</u> ----- 48. ~ 54.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⑥ <u>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u> ----- -----. 제23조(자연재난실)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 --. 1. ~ 18. (현행과 같음) 29. ~ 35. (현행 제19호부터 제 25호까지와 같음)
--	---

26. ~ 35. (생략)

3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
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지원은 제외하
다)

37. 재난과 관련된 상황분석 및
상황판단회의의 운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운영은 제외한다)

38. 재난사태의 선포·해제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
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사항
은 제외한다)

39. 재난 관리대책 수립 및 운영
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
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사
항은 제외한다)

19. ~ 28. (현행 제26호부터 제
35호까지와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3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
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
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미세
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

<u>40. 재난 위험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u> <u>41.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u> <u>42. 재난 유형별 표준대응방법의 개발·보급(「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개발·보급은 제외한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43. ~ 45. (생략)</u>	<u>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관련 지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39호에서 제45호까지 같다)</u> <u>40. 재난과 관련된 상황분석 및 상황판단회의의 운영</u> <u>41. 재난사태의 선포·해제에 관한 사항</u> <u>42. 재난 관리대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u>43. 재난 위험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u> <u>44.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u> <u>45. 재난 유형별 표준대응방법의 개발·보급</u> <u>36. ~ 38. (현행 제43호부터 제45호까지와 같음)</u>
--	--

④ 재난관리정책국장은 제3항 제1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 자연재난대응국장은 제3항 제32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④ 재난관리정책국장은 제3항 제1호부터 제24호까지, 제39호부터 제45호까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중 낙뢰,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에 따른 자연재난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관련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 자연재난대응국장은 제3항 제25호부터 제38호까지, 제39호부터 제45호까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중 낙뢰,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에 따른 자연재난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제35조(기록관리부) ① (생략)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기록물 수집·분류 및 평가 정책의 수립·총괄·조정</u> <신설> 2. ~ 8. (생략)	<u>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u> 제35조(기록관리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u>기록물 수집·분류·평가 및 폐기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시행</u> 1의2. <u>기록물평가심의회</u>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 8. (현행과 같음)
제36조(기록서비스부) ① (생략)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 7. (생략) 8. <u>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시행</u> 9. <u>기록물평가심의회</u>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 22. (생략)	제36조(기록서비스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2. ~ 7.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10. ~ 22. (현행과 같음)
제38조(<u>나라기록관, 역사기록관</u>)	제38조(<u>성남분원, 부산분원 및 대</u>)

및 행정기록관) ① 기록원의 기록물 수집·관리 및 전시·열람 등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나라기록관, 역사기록관 및 행정기록관을 둔다.

② 나라기록관, 역사기록관 및 행정기록관에 관장 각 1명을 둔다.

③ 나라기록관장은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하며, 역사기록관장 및 행정기록관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나라기록관, 역사기록관 및 행정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

전분원) ①-----
----- 보존·
전시 및 열람
----- 성남분원,
부산분원 및 대전분원
-----.

② 성남분원, 부산분원 및 대전
분원에 분원장
_____.

③ 성남분원장

----- 부산분원장 및 대

전 분 원 장

-----.

④

분원장

⑤

----- 성남분원, 부산

분원 및 대전분원

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제46조(직무) 국가민방위재난안전
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
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 2. (생략)

제5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명(5급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 5명(5급 5명)은 산업통상자원부, 2명(5급 2명)은 보건복지부, 5명(5급 5명)은 환경부, 2명(5급 2명)은 고용노동부, 6명(5급 6명)은 국토교통부, 2명(5급 2명)은 법제처, 1명(5급 1명)은 국세청, 17명(치안감 1명, 총경 2명, 경정 8명, 경감 2명, 경위 4명)은 경찰청, 8명(소방령 5명, 소방경 1명, 소방위 2명)은 소방청, 1명(5급 1

.

제6장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제46조(직무) 국가재난안전교육원

-----.

1. · 2. (현행과 같음)

제5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8명(치
안감 1명, 총경 2명, 경정 8명,
경감 3명, 경위 4명) -----
7명(소방령 5명, 소방경 1명, 소
방위 1

명)은 산림청, 4명(5급 4명)은 기상청, 6명(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1명)은 해양경찰청,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63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안전예방정책실에 두는 재난안전정보센터, 자연재난실에 두는 재난관리정책국·자연재난대응국, 사회재난실에 두는 사회재난대응국, 재난복구지원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명)-----
-----7명(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2

명)-----

-----.

제63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재난안전정보통신국

-----.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생략)

[illegible]

③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5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647</u>	<u>1,643</u>	-4
·	·	·	
·	·	·	
일반직 계	<u>1,605</u>	<u>1,600</u>	-5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총경 포함)	<u>1,536</u>	<u>1,531</u>	-5
·	·	·	
·	·	·	
소방공무원 계	<u>8</u>	<u>7</u>	-1
소방령이하	<u>8</u>	<u>7</u>	-1
경찰공무원 계	<u>23</u>	<u>25</u>	+2
·	·	·	
총경 또는 4급 이하	<u>22</u>	<u>24</u>	+2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3]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6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301</u>	<u>1,294</u>	-7
·	·	·	
·	·	·	
일반직 계	<u>1,290</u>	<u>1,283</u>	-7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246</u>	<u>1,239</u>	-7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89